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36

발의연월일: 2020. 12. 22.

발 의 자:추경호·김예지·김용판

김정재 • 박대수 • 박덕흠

성일종 • 유경준 • 윤재옥

윤창현 • 이명수 • 이종배

임이자 · 허은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납부해야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그러나 코로나 대응단계가 2.5단계까지 높아지고 심지어 지난 17일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대응최고 수준인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등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의 강도가 최고단계로 격상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질 우려가 큼.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

금지된 사업장에 한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경감 유인을 높이고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제기간 중 임차인의 사업장(해당 상가건물의 사업장에 한정한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조치 기간이 속하는 달에 한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가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 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 다만, 공제기간 중 임차인의 사업장(해당 상가건물 신설> 의 사업장에 한정한다)이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 기간이 속하는 달에 한 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